

	보도자료	
	6.10(수) 14:00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,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,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* 과제별 소관 연락처는 [별첨1] 본문에 표기		
책임자	손주형 팀장 (3145-8851)	담당자	이종림 사무관 (3145-8852)
	홍길 팀장 (3145-8855)		장항필 선임 (3145-8856)
	성기철 팀장 (2156-8003)		김민하 사무관 (2156-8007)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	최은희 선임 (3145-8635)
배포일	2015. 6. 10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보실(3145-5789~92) 총2매

제 목 : 현장점검반 4.21~5.7 (4~6주차) 건의사항 회신결과

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, 1,469건의 건의를 받음

< 1~9주차 접수현황(잠정) >

(단위: 건,%)

건의사항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현장조치	117	46	48	91	302(19%)
② 유권해석, 비조치	5	37	26	18	86(7%)
③ 관행·제도개선	148	378	297	258	1,081(74%)
합계	270	461	371	367	1,469(100%)

2. 4~6주차 (4.21~5.7)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

- 4~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102건, ②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18건 ③관행·제도개선 349건이며, 이중 관행·제도개선 349건은 회신 완료

-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% 수준 [1~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%(796건 중 391건) 수준]

(단위: 건,%)

회신결과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수용	24	60	51	36	171(49%)
② 불수용	11	19	23	26	79(23%)
③ 추가 검토	12	22	36	29	99(28%)
합계	47	101	110	91	349(100%)

3. 4~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

- 관행·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금융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규제 합리화와 관련되며,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

4~6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
○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 합리화
○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
○ [보험]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
○ [보험] 단종(單種)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
○ [금투]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
○ [금투]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
○ [금투]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 개선
○ 법인고객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 합리화(특정금융정보법)

※ 4~6주차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(<http://better.fsc.go.kr>)에 공개

※ 별첨: 4~6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<별첨> 4~6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

①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 범위 합리화

[금융위 금융제도팀 김연준 팀장(2156-9680), 김정주 사무관(2156-9682)]

- (건의요지)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일정규모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에 애로*

* 고객이 동일한 지주그룹 소속 은행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우연적 사정만으로 은행 자회사가 보험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및 사전에 예치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과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부담

→ 동일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

- (답변요지) 비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와 비교할 때 규제상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동일한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추진(~'15.3분기)

②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

[금융위 서민금융과 김기한 과장(2156-9470), 임준빈 사무관(2156-9478)]

- (건의요지)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(서울, 광역시, 도)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소재한 금융회사(저축은행, 상호금융)만 취급 가능하도록 제한*

* 본지점이 대구에만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대구·경북·강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본지점이 소재한 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만 햇살론 취급이 가능(경북, 강원 소재 사업자에게는 햇살론 취급 불가능)

→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한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의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지역을 확대할 필요

- (답변요지) 관련 법규에 따른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*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, 제도개선 추진(~'15.7월)

* ①저축은행 : 6개 영업구역 구분(서울 / 인천·경기 / 부산·울산·경남 / 대구·경북·강원 /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 / 대전·충청)

②상호금융: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 (수도권 / 강원 / 충북 / 충남 / 전북 / 전남 / 경북 / 경남 / 제주)

**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

③ [보험]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 차별화

[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조남경 팀장(3145-8230), 김동훈 선임(3145-8229)]

- **(건의요지)** 보험계약 체결시 **저축성** 또는 **보장성** 여부와 **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** 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**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**
→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의 **상품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, '청약서' 및 '계약전 알릴의무 사항'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** 마련 필요

- **(답변요지)** 현재 사용중인 **'계약전 알릴의무 사항'**은 다양한 영업방법, 상품종류 등의 **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** 있으므로, 상품특성이 **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(계약전 알릴의무 사항) 개정 추진**

*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의견 수렴(~'15.2분기)

표준사업방법서 개선안 마련 및 시행세칙 개정(~'15.3분기)

④ [보험] 단종(單種)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

[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홍장희 팀장(3145-7471), 오정근 수석(3145-7472)]

- **(건의요지)** '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('14.7월)'에 따라 **단종보험대리점***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**보증보험은 취급대상종목에서 제외**

* 화재, 특종(책임, 상해여행, 상해기타, 종합, 권리, 기타)보험 모집 가능

- 전세계약 등 각종 거래의 **안전성을 담보**하는 데 필요한 **보증보험***을 소비자가 **쉽게 접근 가능한 채널**을 통해 **편리하게 가입**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**보증보험을 포함**시킬 필요

* 공인중개사의 '전세금보장신용보험', 세무사의 '납세보증보험' 등

- **(답변요지)**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**취급이 허용된 보험상품** 종목에 **전세금 보장신용보험, 납세보증보험** 등 제도 도입 취지에 **부합하는 보증보험상품**이 포함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(~'15.4분기)

⑤ [금투]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시 절차 간소화

[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업무팀 윤덕진 팀장(3145-6725), 이인규 선임(3145-6722)]

- (건의요지) 고객이 동시에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의 반복 작성에 따라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

*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,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 등 1회 작성으로도 투자자 보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류도 각각의 펀드 가입 시 마다 작성

→ 고객이 다수의 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마다 요구하는 동일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불편 경감 필요

- (답변요지)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 T/F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(~'15.3분기)

⑥ [금투]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

[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형주 과장(2156-9870), 김성준 사무관(2156-9876)]

- (건의요지)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해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*가 가능하나, 주식시장에는 이와 같은 구제제도가 없음

* 예상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구제가격(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 ± 상품별 가격제한폭의 1/3)으로 정정

→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도 대량투자자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필요

- (답변요지) 최근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 확대(±15% → ±30%)로 착오 매매에 따른 대규모손실 위험이 현재보다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,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(~'15.4분기)

⑦ [금투]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 개선

[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박종길 팀장(3145-7600), 김대유 조사역(3145-7607)]

- **(건의요지)**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광고를 동일 내용으로 재광고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, 투자유인 내용이 없는 사항 등 단순정보 제공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
→ 광고에 대한 사전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

- **(답변요지)**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(~'15.3분기)
 -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를 유효기간 경과 후에 **재광고** 하는 경우에는 **증권사 자체 심사(준법감시인 승인)**로 대체
 -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는 **사항, 업황 등 단순 정보**는 **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 광고에서 제외**

⑧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법인고객 금융거래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 합리화

[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 윤상기 팀장(2156-9460), 노소영 사무관(2156-9423)]

- **(건의요지)**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신규 금융거래 또는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의 경우 **대표자의 실지명의(성명, 주민번호)를 확인**토록 하고 있으나, **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고객의 민원** 야기

→ 법인 대표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확인토록 제도개선 필요

- **(답변요지)**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·업종·대표자 성명 등 만으로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,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시 **대표자의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**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추진(~'15.4분기)